

< 변경 대비 표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1년 5월 7일
3. 주요 변경 사항 :
 - 환매수수료 삭제
 - Class C-P, Class C-Pe,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연금),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설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u>14. Class 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u> <u>15. Class C-P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u> <u>16.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 <u>17. Class C-P2e(퇴직연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 <u>18. Class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19.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3. (현행과 같음)</p> <p>14. Class C-P 수익증권</p> <p>15. Class C-Pe 수익증권</p> <p>16.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p> <p>17. Class C-P2e(퇴직연금) 수익증권</p> <p>18. Class S-P 수익증권</p> <p>19.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p>
<p>제39조(투자신탁보수)</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 (현행과 같음)</p> <p>14. Class C-P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6.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5. Class C-P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6.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2</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7. Class C-P2e(퇴직연금)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1</p>

	<p><신설></p> <p><신설></p>	<p>다. <u>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u>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p>18. <u>Class S-P 수익증권</u>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u> 나. <u>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8</u> 다. <u>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u>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p>19. <u>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u>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u> 나. <u>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7</u> 다. <u>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u>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u>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② <u>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1. <u>30일 미만 : 이익금의 70%</u> 2. <u>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p> <p>③ <u>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④ <u>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p>	<p>④ <u>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u>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② (생략) ③ <u>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부칙	<신설>	<u>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u>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u>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u>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매수수료	<u>·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u> <u>·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u>	<u>해당사항 없음</u>
효력발생일		2021년 05월 07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신설> <신설>	- <u>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 <u>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u>

	<p>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p>①~②(생략)</p> <p><u>③ 판매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u> • <u>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lass C1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한 종류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 	<p>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p>①~②(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p> <p>다. 기타 투자위험</p>	<p><u>-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 요청시 수익증권이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의 환매금액이 작아 질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u></p>	<p><u><삭제></u></p>
<p>11. 매입, 환매, 전환기준</p> <p>가. 매입</p> <p>(라) 종류별 가입자격</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u> <u>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u></p> <p><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u> <u>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u></p> <p><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p> <p><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u> <u>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p> <p><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u>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u></p>

	<p><신설></p>	<p><u>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u>: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u></p>
<p>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p>	<p><u>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의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u> <u>-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u> <u>-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u> <u>①~②(생략)</u> <u>③ 판매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u> <u>•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u> <u>•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lass C1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u></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u> <u>①~②(현행과 같음)</u> <u><삭제></u></p>

	<u>한 이후의 보유한 종류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u>[변경전1]</u>	<u>[변경후1]</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 과세	<u>[변경전2]</u>	<u>[변경후2]</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u>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매수수료	<u>·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u> <u>·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u>	<u>해당사항 없음</u>
효력발생일		2021년 05월 07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u><신설></u> <u><신설></u>	- <u>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 <u>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변경전1]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 계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외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50% 이내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7000	0.7000	0.0300	0.0150	1.4450	1.3900	0.0025	1.4475	1.4475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0.7000	1.4000	0.0300	0.0150	2.1450	1.5900	0.0026	2.1476	2.1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1.5900	0.0026	1.7476	1.7476	0.8333

체감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0.7000	0.8500	0.0300	0.0150	1.5950	1.5900	0.0026	1.5976	1.5976	0.7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0.7000	0.7500	0.0300	0.0150	1.4950	1.5900	0.0026	1.4976	1.4976	0.83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1.1800	0.0016	1.2466	1.2466	0.8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00	0.0150	0.7450	-	0.0026	0.7476	0.7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l)	0.7000	0.2000	0.0300	0.0150	0.9450	-	0.0026	0.9476	0.9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0.7000	0.0300	0.0300	0.0150	0.7750	-	0.0026	0.7776	0.7776	0.833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1.0100	0.0000	1.0950	1.0950	0.837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	0.0000	1.0950	1.0950	0.841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	0.0026	1.2476	1.2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7000	0.7400	0.0300	0.0150	1.4850	-	0.0026	1.4876	1.4876	0.8333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6	400	562	911	1,94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6	400	562	911	1,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C2,C3,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	408	589	953	2,03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0	408	589	953	2,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168	258	452	1,02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2	168	258	452	1,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l)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10	322	565	1,28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2	210	322	565	1,2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3	251	440	1,0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0	163	251	440	1,00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1	279	402	667	1,4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1	279	402	667	1,45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30	354	620	1,4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2	230	354	620	1,4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335	475	776	1,67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1	335	475	776	1,6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313	481	842	1,918

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2	313	481	842	1,918
-------------	-------------------	-----	-----	-----	-----	-------

[변경후1]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 계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l)	최초 납입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에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50% 이내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	-	-	

<u>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u>	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u>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u>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u>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7000	0.7000	0.0300	0.0150	1.4450	1.3900	0.0025	1.4475	1.4475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1)	0.7000	1.4000	0.0300	0.0150	2.1450	1.5900	0.0026	2.1476	2.1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2)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1.5900	0.0026	1.7476	1.7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3)	0.7000	0.8500	0.0300	0.0150	1.5950	1.5900	0.0026	1.5976	1.5976	0.7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4)	0.7000	0.7500	0.0300	0.0150	1.4950	1.5900	0.0026	1.4976	1.4976	0.83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1.1800	0.0016	1.2466	1.2466	0.8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00	0.0150	0.7450	-	0.0026	0.7476	0.7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l)	0.7000	0.2000	0.0300	0.0150	0.9450	-	0.0026	0.9476	0.9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0.7000	0.0300	0.0300	0.0150	0.7750	-	0.0026	0.7776	0.7776	0.833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1.0100	0.0000	1.0950	1.0950	0.8375
수수료후취-온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	0.0000	1.0950	1.0950	0.8411

라인슈퍼 (S)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	0.0026	1.2476	1.24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7000	0.7400	0.0300	0.0150	1.4850	-	0.0026	1.4876	1.4876	0.83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0.7000	0.6000	0.0300	0.0150	1.3450	=	=	1.3450	1.34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0.7000	0.3000	0.0300	0.0150	1.0450	=	=	1.0450	1.04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0.7000	0.4200	0.0300	0.0150	1.1650	=	=	1.1650	1.16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0.7000	0.2100	0.0300	0.0150	0.9550	=	=	0.9550	0.95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0.7000	0.1800	0.0300	0.0150	0.9250	=	=	0.9250	0.92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0.7000	0.1700	0.0300	0.0150	0.9150	=	=	0.9150	0.9150	=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6	400	562	911	1,94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6	400	562	911	1,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C2,C3,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	408	589	953	2,03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0	408	589	953	2,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168	258	452	1,02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2	168	258	452	1,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l)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10	322	565	1,28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2	210	322	565	1,2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3	251	440	1,0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0	163	251	440	1,00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1	279	402	667	1,4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1	279	402	667	1,45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30	354	620	1,4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2	230	354	620	1,4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335	475	776	1,67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1	335	475	776	1,6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313	481	842	1,918

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2	313	481	842	1,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283	435	762	1,73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8	283	435	762	1,7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20	338	592	1,34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7	220	338	592	1,3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245	376	660	1,5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9	245	376	660	1,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201	309	541	1,2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8	201	309	541	1,2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4	299	524	1,19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5	194	299	524	1,1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2	296	518	1,18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4	192	296	518	1,180

[변경전2]

<신설>

[변경후2]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 C-Pe, S-P 수익증권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p>[납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은 금액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